

대출계약 철회권 안내

1. 대출계약 철회권이란?

- 금융 소비자가 대출신청 이후에도 대출의 필요성, 대출금리 및 규모의 적정성 등에 대해 재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로, 금융 소비자는 대출 철회기한(대출실행일부터 14일) 이내에 철회의 의사표시를 하고 대출 원리금 및 부대비용 등을 반환함으로써 대출 계약으로부터의 탈퇴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.
- 대출계약 철회권 행사가 가능한 메르세데스벤츠 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(주)의 상품은 할부 금융에 국한되며, 운용리스 및 금융리스 상품은 대출 계약 철회권 대상이 아닙니다.

2. 대출계약철회권 주요내용

구분	내용
적용대상	개인 대출 고객(개인사업자 및 법인 제외)
철회대상	- 4천만원 이하 신용대출 - 2억원 이하 담보대출
절차 및 요건	- 철회기한(대출실행일부터 14일) 이내 철회 의사 표시 - 전화(1577-2320), 홈페이지, 서면을 통한 신청 - 원리금(대출원금+경과이자) 및 금융회사가 부담한 부대비용 전액 반환
철회제한	- 메르세데스-벤츠 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(주)를 대상으로 1년 이내에 2회 초과하여 철회 하는 경우 - 전체 금융회사 대상으로 1개월 이내 1회 초과하여 철회하는 경우
철회효과	-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- 대출정보 삭제(금융회사, 신용정보원, CB사 등)

3. 대출계약 철회권 행사 시 유의 사항

- 대출계약철회기한 이내에 원리금 및 부대비용 미반환시에는 철회가 불가능하며 그러한 신청은 무효 처리됩니다.
- 대출계약 철회에 대한 처리가 완료된 이후에는 철회 취소가 불가능합니다.